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87호 2019. 7. 17.(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157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부분]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19-162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4

【공 고】

○ 정선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30호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157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부분] 고시

농촌 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부분]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 북평면 중심지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삶을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외 배후마을 일원
   -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북평 문화광장
       - ○ 금회 승인 : 복지회관리모델링 415㎡, 주차장조성 2,700㎡
     - 지 역 경 관 개 선 : 명품테마거리, 근대문화거리 조성
     - 지 역 역 량 강 화 :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4. 사 업 비 : 5,625백만원(국비 3,938, 지방비 1,687)

○ 금회 승인 : 2,021백만원(복지회관리모델링 1,188백만원, 주차장조성 833백만원)

5.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021.12.31.까지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7. 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도시과 도시개발 ☎033-560-2464)

정선군 고시 제2019-162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

2019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정 선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사방지 지정명세서 별첨

2. 지정사유 : 2019년 사방사업(사방댐) 대상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사방댐)

4. 지정년월일 : 2019. 07. 15.

5.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는 정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 산림과(033-560-2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30호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정 선 군 수

1. 개정 이유

가. 귀농업인 정착지원 시 지원자격 및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귀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준으로 귀농업에 대한 용어 및 내용을 변경하고 법령에 없는 일부내용을 삭제하여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업인·귀촌인의 정의 재정립(안 제2조)

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 범위 설정 (안 제6조)

다. 추진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업 범위 변경(안 제7조)

라. 귀농업인 지원자격 및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8조)

마. 귀농업인 지원대상의 확대 및 지원기간의 명확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 해당 귀농·귀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3103)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농업기술센터
❍ 전 화: 033-560-2856
❍ 팩 스: 033-562-4153
❍ 이 메 일: youngjinjin@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선군 정착을 유도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업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귀농·귀촌”을 “귀농업·귀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귀농업·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 귀농업·귀촌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수립할 경우에는”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귀농업·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귀농업·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업·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업무를 수행하는 귀농업·귀촌종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업·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문, 정보 제공, 고충 처리 애로 사항의 해결
2. 귀농업인·귀촌인(이하 “귀농업인등”이라 한다)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귀농업·귀촌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선 또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그 밖에 귀농업인등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6조제2항 중 “귀농업·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수행”으로,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귀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업인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업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 거주시설 마련 사업
2.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
5.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
6. 귀농업·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업·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
7. 농지, 축사 등 매입 또는 임차
8. 귀농업·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귀농업·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귀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귀농업·귀촌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3. 귀농업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신고일로부터 만 5년 이내까지로 하고 지원횟수는 1회 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귀농인·귀촌인 지원보조금 등이”를 “귀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보조금”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취소 및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업인등이 법 제21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의 인구유입 촉진과 귀농인·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선군 정착을 유도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도시지역에서 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업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다)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인”이란 군 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거주자가 군으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귀농·귀촌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귀농업·귀촌 ----------.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귀농업인----------.
② 귀농인·귀촌인은 군의 지원을 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농인·귀촌인의 체계적 육성을	제5조(귀농업·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위하여 수립하는 정선군 귀농·귀촌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절차 2.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 4.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 귀농업·귀촌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정선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정선군 귀농·귀촌지원센	제6조(귀농업·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귀농업·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업·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수 있도록 다음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각호에 업무를 수행하는 귀농업·귀촌종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업·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문, 정보 제공, 고충 처리 애로 사항의 해결 2. 귀농업인·귀촌인(이하 “귀농업인등”이라 한다)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귀농업·귀촌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선 또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그 밖에 귀농업인등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수행----------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
<신 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이	제7조(귀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업인등의 안정적인

고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영 제8조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업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 거주시설 마련	1. 임시 거주시설 마련 사업
2. 농업관련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자금과 농업안정 기금 융자. 다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은 제외한다.	2.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3.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및 귀농인 실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귀농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4.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
5.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5.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
6.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6. 귀농업·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업·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농지, 축사 등 매입 또는 임차
② 추진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귀촌인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8. 귀농업·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귀농업·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귀농인 정착지원) ① 군수는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여 귀농을 권장하고 우수한 자질을	제8조(귀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업인등은 다음 각

갖춘 젊은 농업인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귀농인을 귀농인 정착지원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귀농업·귀촌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1.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2년 이내에 귀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경영인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2.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농업인	3. 귀농업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3. 귀농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신고일로부터 만 5년 이내까지로 하고 지원횟수는 1회 한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연차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실태 조사 등) 군수는	<삭 제>

제8조에 따른 귀농인 정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의 관리실태 2.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귀촌인 지원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 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보조금 ----------.
제11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군의 지역 외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지원취소 및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업인등이 법 제21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5. 지원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귀농인 정착지원을 받은 귀농인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고, 융자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그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1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22.>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2조(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업인・어업인 교육, 상담・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원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정선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방법 및 사용, 그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본호신설 2018.11.12.]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11.12.>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서로 뽑으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12.>
④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2018.12.21>
1.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11.12.>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에 고시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운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개정 2018.11.12.>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1.12.>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12.>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2.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3.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1.12.>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사업자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때
2. 사업이 폐지된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2018.11.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

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처분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18.11.12.>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11.12.>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

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